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총무과	1

(2014. 3. 31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이진표]

1. 안 건 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4년 3월 21일
-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- 2014년 3월 25일

4. 관련근거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5. 개정이유

-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,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6. 주요내용

- 장기재직휴가 신설 :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재충전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기회 제공(안 제24조제13항)
 -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 : 10일
 -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 : 20일
 - 30년 이상 재직자 : 20일
- 산모 건강관리, 태아보호를 위해서 모성보호시간 신설(안 제24조제4항)
 -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
단,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
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
- 셋째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연가 산정 재직기간에 산입
(안 제18조제2항)
 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에 따라 셋째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
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
- 연가가산 적용대상 및 인정범위 조정(안 제18조의2)
 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특수
경력직공무원 이외에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7조제2항제2호·제3호 및
제9호에 따라 임용된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력직공무원도 연가
가산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, 인정범위를 민간경력에서 공무원
경력 외의 유사경력으로 명확히 규정함

7. 검토결과

-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등 상위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장기 재직공무원에게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등, 장기재직자 및 여성공무원의 근무조건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,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3을 근거로 10년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(안 제24조제13항)하고
 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3제6항 및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24조를 근거로 산모 건강관리와 태아보호를 위해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1~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(안 제24조제4항)하며
 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셋째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연가 산정 재직기간에 산입(안 제18조제2항) 하였으며
 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1항을 근거로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력직공무원도 연가 가산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면서, 그 인정 범위를 민간경력에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으로 명확히 규정(안 제18조의2)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
- 상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부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 셋째 자녀부터의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으로, 관계 법령 및 공익을 해치는 요소가 없음

관계법령 및 근거

[지방공무원법]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지방공무원 복무규정]

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7조제2항제2호·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.

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, 휴직기간·정직기간·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.

1. 임신·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(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,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)

제7조의3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.

[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]

제24조(특별휴가)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,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. 단,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.